

의안번호	제 1002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2년 3월 8일

#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0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3. 8.

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 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제4항 및 「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나. 관련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없는 해당 조문을 삭제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(안 제4조제4호)
- 나. 「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함(안 제4조제5호, 제6호 및 제8호)
- 다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」 제4조의 심의사항을 대신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호)
- 라. 그 밖의 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,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및 안 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나. 비용추계서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법령: 별첨

##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자가”를 “각 호의 사람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부교육감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외부위촉위원 :”을 “위촉직 위원: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기획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위촉직”으로,

“하되”를 “하며, 한 차례만”으로, “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위원들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(이하 “지방교육재정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”을 “위원회는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(이하 “지방교육재정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에 관한 사항
7.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
8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
9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 중 “간사 1인을”을 “간사를”로, 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”를 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1주일전”을 “1주일 전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대하여 자료”를 “자료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구성 및 운영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<u>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(교원 제외)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. 단,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자가 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위원 : 부교육감 · 교육국장 · 행정국장 · 기획국장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라 <u>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각 호의 사람이</u> ----- -----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: 부교육감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</u></p>

2. 외부위촉위원 :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·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

③위원장은 부교육감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.

④위원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(이하 “지방교육재정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2. 위촉직 위원: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사람

③ -----

-- 기획국장-----.

④위촉직 -----

----- 하

며, 한 차례만 -----

----- 있다. 다만, 위촉

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

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

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위원장-----

-----

-----

-----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1.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
2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3. 삭 제

4.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관한 사항

5. 「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

6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

7.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
1.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(이하 “지방교육재정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7.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

8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

9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간사) -----  
----- 간사를 -----  
-----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

제7조(실무대책반) ① (생략)

②실무대책반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심의안건의 배부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)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,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실무대책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 필요한 -----  
-----  
----.

제8조(심의안건의 배부) -----  
----- 1주일  
전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)  
-----  
-----  
----- 자료 -----  
-----  
--.

제10조(회의록) -----  
----- 각호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-----  
-----

<삭제>

##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54조(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·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,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·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29.>

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

제4조(기능)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7. 11. 24., 2019. 9. 17.>

1.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
2.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
3.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

4.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
5.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
6.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## □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8조(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) ① 교육감은 교육청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교육감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,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(교원 제외)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. 단,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.<개정 2004.10.8,>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 <개정 2016.7.29., 2019.2.8>

1. 당연직위원 : 부교육감·교육국장·행정국장·기획국장<개정 2009.5.22., 2012. 6.29>

2. 외부위촉위원 :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·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 <개정 99.1.1, 2004.10.8>

③위원장은 부교육감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. <개정 2004.10.8., 2012. 6.29., 2016.7.29>

④위원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4.10.8>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(이하 "지방교육재정계획"이라 한다)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2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3. 삭제 <2015.5.15.>
4.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관한 사항 <신설 2007.2.9>
5. 「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7.12>
6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9.20.>
7.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07.2.9, 2019.7.12., 2019.9.20.>

#### □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18.>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①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5. 12. 18.>

1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②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12. 18.>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
2. 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경우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

**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①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기금관리·운용의 심의)**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**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8. 6., 2015. 12. 18.>

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8.>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

**제7조(회계공무원)**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<개정 2012. 6. 29., 2016. 7. 29.>

1. 기금운용관 : 행정국장
2. 기금출납원 :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**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「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할 수 있다.